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50호)

2025.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2213550)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68조 제3호)	3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221355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13.
3. 회 부 일 : 2025.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 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도로 점용료는 이를 감면받고 있으나, 철도의 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라는 공익적인 사업 목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역사 개량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전기통신 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의 설치 사업과

더불어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의 설치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호).

Ⅲ. 검토의견

1.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68조제3호)

현행법¹⁾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사업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역사를 포함함)의 설치사업을 점용료 감면 대상인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예시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1)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u>	3. <u>전기통신 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및 철도 시설(역사를 포함한다)의 설치 사업 등 국민경제</u> ----- -----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u>

가. 검토의견

현행법 시행령²⁾에서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할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시설과 함께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역사를 포함한다)의 설치 사업을 현행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예시로 열거함으로써 이들 사업을 도로점용료의 감면

2)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해당 설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전기통신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현행 대통령령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도로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도로법」³⁾ 제2조제1호에 따른

3)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보도·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도로를 구성하는 차도, 보도, 터널, 교량 등의 시설 및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도로시설 설치 사업 시 별도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점용료 감면 또한 필요하지 않음.

한편, 철도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선로 및 통신·신호시설 설치 사업 등 일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은 현행법 제68조제1호4)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점용료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4. 옹벽·배수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넙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4)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 9. 9., 2022. 3. 8.>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그런데 개정안은 이와 별개로 철도시설 설치사업을 개정안 제68조제3호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철도공단이 아닌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시설 설치사업인 역 시설 개량사업 등이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바, 이를 통해 대표적인 공익사업인 철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그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제68조제3호5)에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철도시설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6)에 따라 선로, 통신·신호시설 뿐만 아니라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약국, 편의점 등)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5)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4. 15., 2013. 3. 23., 2015. 8. 11., 2018. 3. 13., 2020. 6. 9., 2023. 4. 18.>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고려하여 점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 상·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상수도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상수도조합(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설치하는 사업⁷⁾으로 현행법 제68조제1호⁸⁾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7)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8)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점용료가 전액 면제될 수 있으나, ‘하수도 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물·시설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설치할 수 있다는 점⁹⁾에서 하수도 설치사업시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점용료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감면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건물 등의 설치자 등)의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을 점용료 감면 대상으로 포함할지에 대해 공익성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 9. 9., 2022. 3. 8.>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 9)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국토교통부 의견

개정안 제68조제3호 중 ‘도로시설’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어 점용료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철도시설 중 선로, 신호 시설 등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 현행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이미 전액감면 대상이나, 통상적으로 철도시설 중 역사 및 선로 등은 국가철도공단이 매입한 철도부지 내에 설치하므로 도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님.

한편, 도로구역 상 철도시설은 점용료 부과 대상이나 철도시설은 역사내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비영리, 공익이 아닌 시설을 포함하기에 모든 철도시설을 법령으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철도시설을 법률에 점용료 감면 대상으로 일괄 명시하는 것보다는 도로관리청이 설치사업별로 공익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설치하는 시설 등 비영리, 공익이 아닌 시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모든 상·하수도 시설을 법령으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도로관리청이 설치사업별로 공익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도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률에서 개별적인 감액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추후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법체계상 하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을 법률에 다시 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 적용의 경직성이 높아지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2